

第72回 國 會 會 議 錄 第6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69年 9月14日(日)

議事日程(第6次本會議) 1969年 9月14日(日) 午前10時開議

1. 憲法修正案(繼續)
2. 國民投票法案(代案)

付議된案件

- | | |
|--------------------|----|
| 1. 本會議場所變更의件..... | 1面 |
| 2. 憲法修正案(繼續)..... | 1面 |
| 3. 國民投票法案(代案)..... | 1面 |

(午前 2時27分開議)

○議長(李孝祥) 第6次本會議를 開議하셨습니다.

金澤壽議員外 61人으로부터 國會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議 再開要求가 있어 會議를 再開했습니다.

1. 本會議場所變更의件

(午前 2時28分)

○議長(李孝祥) 會議場所에 있어서는 本會議場을 使用하려고 하였으나 新民會所屬議員들이 籠城中에 있으므로 不得已 이 場所를 使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異議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 場所로 決定이 되었습니다.

2. 憲法修正案(繼續)

(午前 2時29分)

○議長(李孝祥) 憲法修正案을 議事日程第1項으로 上程합니다.

이 修正案은 모든 節次를 다 마치고 이 제 5次本會議에서 表決宣布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會議에서는 그 表決을 行하여야 하겠습니다.

監票委員 네분을 指名하겠습니다.

李相武議員 李珍鎔議員 金益俊議員 한분 政友會에서 車亨根議員 以上 네분에게

付託합니다.

그 다음에 監票委員은 다시 한번 더... 다시 李相武議員 代身 朴柱炫議員 다음 李珍鎔議員 金益俊議員 車亨根議員 네분이 올시다.

빨리 빨리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投票用紙가 이렇습니다.

可 否가 있고 可하신 분은 그 밑에 自己 姓名을 쓰셔야 됩니다.

否하신 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呼名하겠습니다.

(午前2時32分 投票開始)

(午前2時38分 投票完了)

○議長(李孝祥) 投票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안하신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開票를 始作하겠습니다.

名牌數 122 總投票數 122 可 122票로써 憲法修正案은 憲法第1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在籍議員 3分之2 以上の 贊成을 얻었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贊成議員名單은 末尾에 記載)

3. 國民投票法案(代案)

(午前2時49分)

○議長(李孝祥) 그다음에 議事日程 第2項 國民投票法案을 上程합니다.

提案者 內務委員會 金容鎮議員이 說明하시
겠습니다.

○內務委員長代理(金容鎮) 國民投票法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民投票法案에 대한 審議는 8月20日로부터
內務委員會 第3次會議 4次 5次 6次 9次 會議
를 열어서 共和黨의 金容鎮議員外 78인이 提案
한 案과 新民黨의 金相賢議員外 43인이 提案
한 案을 併合審議한 結果 略式公聽會를 열어서
法曹界와 言論界人士의 意見을 듣고 兩黨에서
5人小委員會를 構成해서 意見調整을 한 結果
19個事項에 대해서 合議를 보았습니다.

그 合議한 事項을 金容鎮議員外 78인이 提案
한 案에 加味해서 修正을 해서 內務委員會
의 代案으로 提案을 하게된 것입니다.

提案理由에 대해서는 油印物로 配付해 드린
바 있어서 說明을 省略하겠습니다.

以上으로 審査報告와 提案說明을 마치겠습
니다.

(參照)

國民投票法案(代案)

(內務委員長)

提案理由

從來의 國民投票法은 舊國家再建非常措置法
第9條에 의거하여 現行憲法을 確定시키기 위
한 國民投票 實施를 위하여 制定된 것으로
이는 現行 憲法第121條에 規定된 國民投票
를 實施하기에는 適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現行憲法에 의한 國民投票를 實施할 수 있
도록 法律을 마련하려는 것임.

國民投票法案(代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投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들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
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者를 말한다.

第3條(國民投票事務의 協助) 官公署 기타 公
共機關은 國民投票管理機關으로부터 國民
投票事務의 實施에 필요한 協助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優先적으로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4條(投票權行使에 대한 保障) 公務員 學生
또는 他人에게 雇傭된 者가 投票人名簿의
閱覽 또는 投票에 要한 時間은 休務 또
는 休業으로 하지 못한다.

第5條(經費負擔) 國民投票管理에 要하는 經
費는 國庫가 負擔하고, 投票管理에 支障이
없도록 豫算을 配定하여야 한다.

第6條(公務員의 範圍) 이 法에서 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
한다.

1. 國家公務員法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및
地方公務員法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 다
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別定職公務員은
除外한다.

2.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第7條(國民投票管理機關) 이 法에 의한 國
民投票는 選舉管理委員會法에 의한 各級
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管理한다.

第2章 投票權

第8條(投票權) 20歲以上の 國民은 投票權이
있다.

第9條(年齡算定基準) 投票權者의 年齡은 憲
法改正案公告日 現在로 算定한다.

第10條(投票權이 없는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投票權이 없다.

1. 禁治產 또는 限定治產宣告를 받은 者.
2.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
이 終了되지 아니 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 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3章 國民投票에 관한 區域

第11條(國民投票의 單位) 國民投票는 全國을
單位로 하여 이를 行한다.

第12條(投票區) 投票區는 憲法改正案公告日 現
在의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投票區로 한다.

第13條(開票區) 區·市·郡을 開票區로 한다.
다만, 憲法改正案公告日 現在로 區·市·郡
안에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地域選舉區가
2以上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選舉區를
開票區로 한다.

第14條(行政區域의 變更) 憲法改正案公告日로
부터 投票日까지의 사이에는 行政區域의
廢置 變更 分合이 있거나 第12條 第13條

에 規定하는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地域 選舉區의 變更이 있어도 國民投票에 관한 區域은 變更하지 아니한다.

第4章 投票人名簿

第15條(投票人名簿의 作成) ①區·市·邑·面의 長은 憲法改正案公告日現在로 그 管轄 區域안에 住所를 가진 投票權者를 投票區 別로 住民登錄票에 依據하여 憲法改正案公告日로부터 10日以內에 投票人名簿를 作成 하여야 한다.

②投票人名簿에 登載된 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憲法改正案公告日後 31日 現在에 스스로 投票所에서 投票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憲法改正案公告日로부터 15日以內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不在者申告를 할수 있다.

1.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區밖에 長期 旅行하는 國內外旅行者와 國外에 滯留 또는 駐留하는 者.

2. 法令에 依하여 營內 또 艦艇에 長期寄 居하는 者.

3. 病院 療養所 矯導所 船舶등에 長期寄 居하는 者.

③區·市·邑·面의 長은 前項의 申告가 있을 때에는 投票人名簿에 이를 表示하는 同時에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作成 하여야 한다.

④投票人名簿에는 投票人의 姓名·住所·性 別과 生年月日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入 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人以上의 投票人名簿에 登載 될 수 없다.

⑥投票人名簿의 書式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區·市·邑·面의 長은 投票人名簿의 謄 本 1通을 不在者申告人名簿確定後 即時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選舉管理委員會法第 2條6項의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送付하여야 한다.

⑧1 投票區의 投票權者의 數가 2,000人을 넘을 때에는 그 投票人名簿를 2個로 分級 할 수 있다.

第16條(名簿作成의 監督) 投票人名簿의 作成

에 관하여는 當該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監督한다.

第17條(名簿寫本의 交付) ①區·市·邑·面의 長은 當該開票區의 大統領이 所屬하는 政黨(이하 與黨이라 한다)과 大統領이 所屬 하지 아니하는 政黨으로서 國會에서 最多 數의 議員數를 가진 政黨(이하 第1野黨 이라 한다)의 地區黨의 代表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確定된 投票人名簿(不在者申 告人名簿를 包含한다) 寫本 1通을 投票人 名簿 確定後 遲滯없이 無料로 申告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人名簿 寫本의 交付申請은 投票人名簿作成期間 滿了日후 3日까지 當該區·市·邑·面의 長에게 하 여야 한다.

第18條(名簿의 閱覽) ①區·市·邑·面의 長은 投票人名簿作成期間滿了日의 翌日로부터 5日間 投票人名簿를 區·市·邑·面의 事務所나 區·市·邑·面의 長이 指定한 場 所에서 閱覽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 人名簿의 謄本을 그 里 洞事務所에 備置 하여 閱覽하게 할 수 있다.

②投票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名簿를 自由 로이 閱覽할 수 있다.

③第1項의 期間과 場所는 閱覽開始日前 3日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投票人名簿의 閱覽期間은 公休日에 불구 하고 每日 上午 9時부터 下午 5時까지 로 한다.

第19條(異議申請 投票人名簿의 訂正) ①投票 權者는 누구든지 投票人名簿에 漏落 또는 誤記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閱覽期間 內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提 出하여 그 訂正을 要求할 수 있다

②區 市 邑 面의 長은 前項의 要求를 받은 때에는 3日以內에 審査決定하여야 하되 그 要求가 正當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即時 投票人名簿를 訂正하고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正當하지 아니 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과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通知하여

야 한다.

第20條(異議決定에 대한 不服申請) ①前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申請人 또는 그 代理人은 그 通知를 받은 後 2日以內에 當該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再審을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再審要求를 받은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3日以內에 審査決定하되 그 要求가 正當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即時 當該 區·市·邑·面의 長에게 通知하여 投票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同時에 要求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正當하지 아니 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그 뜻을 要求人 또는 그 代理人과 當該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21條(投票人名簿의 確定과 有効期間) 投票人名簿는 投票日前 5日에 確定되며 當該 國民投票에 限하여 効力を 가진다. 다만 不在者申告人名簿는 그 申告期間滿了 日의 翌日에 確定된다.

第22條(投票人名簿의 再作成) ①天災 地變 기타의 事故로 因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다시 投票人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投票人名簿의 作成 閱覽 確定 有効期間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憲法改正案의 揭示등

第23條(憲法改正案의 揭示)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公告된 憲法改正案을 投票權者에게 周知시키기 위하여 揭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의 揭示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率로 한다. 다만, 區·市에 있어서는 人口 300人에 1枚의 比率로 한다.

③憲法改正案의 揭示文에는 憲法改正案만을 記載하여야 한다.

④憲法改正案의 揭示文의 規格·書式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國民投票公報의 發行) ①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憲法改正의 理由·主要骨子·憲法改正案·國民投票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을 掲載한 國民投票公報를 1回以上 發行하여야 한다.

②國民投票公報의 規格·作成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國民投票公報의 配付) ①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國民投票公報를 開票區管內 每世帶에 投票日前 3日까지 郵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無料로 한다.

②不在者申告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에게는 國民投票公報를 郵便投票의 投票用紙와 同封하여 送付할 수 있다.

第26條(憲法改正案의 放送) 國家가 管理하는 放送과 텔레비전의 管理者는 投票權者에게 周知시키기 爲하여 公告된 憲法改正案의 內容에 對한 贊成 또는 反對의 討論을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中 院內의 各政派에게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20分씩 3回以上 放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第6章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

第27條(定義) ①이 法에서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이라 함은 國民投票의 對象이 되는 事項에 대한 贊成 또는 反對의 運動을 말한다.

②國民投票의 對象이 되는 事項에 관한 單純한 意見의 開陳·意思의 表示는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이 아니다.

第28條(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의 期間)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은 憲法改正案公告日로부터 投票日前日까지에 限하여 이를 할 수 있다

第29條(屋外集會運動의 限界)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중 屋外集會에 의한 運動은 이 法에 規定된 演說會 以外의 方法으로 할 수 없다.

第30條(演說會) ①政黨과 團體는 國民投票에 관한 演說會를 開催할 수 있다.

②前項의 演說會라 함은 미리 一定한 場所와 時間을 정하여 多數人을 集合하게 하여 實施하는 屋外集會를 말한다.

③公務員과 選舉管理委員會委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에서의 演說員이 될 수 없다

④第1項의 演說會를 開催하고자할 때에는 政黨과 團體는 憲法改正案에 대한 贊成 또는 反對演說로 區分하여 大統領令이 定하

는 바에 의하여 開票時間前 24時間까지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前項의 申告가 同一한 場所에 2以上이 있을 때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申告書接受順位에 의하여 그 順位를 調整하여야 한다.

⑥演說會의 場所使用은 1회에 5時間을 超過할 수 없다.

⑦演說會는 贊成과 反對로 區分하여 區市에 있어서는 開票區마다 그 開票區管轄區域內에서 各各 2회를 郡에 있어서는 各各 邑·面 數를 超過할 수 없다.

⑧前項의 경우에 演說會의 回數算定에 있어서는 그 開催者가 누구임을 不問하고 贊成 또는 反對에 따라 各各 合算한다.

⑨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團體가 演說會의 開催의 申告를 한 경우에도 그 開催前에 政黨이 同一한 目的으로 演說會의 開催를 申告한 때에는 政黨에게 優先하여 演說會를 開催하게 하여야 한다.

⑩同一한 目的의 演說會의 開催申告가 政黨사이 에 競合된 때에는 與黨과 第1野黨에게 優先하여 演說會를 開催하게 하여야 하며 與黨과 第1野黨以外의 政黨 또는 團體의 演說會 開催申告가 있을 때에는 開票區 選舉管理委員會는 贊成 또는 反對에 따라 그 同一한 目的의 與黨 또는 第1野黨의 同意를 얻어 第8項의 規定에 依한 回數를 調整하여야 한다.

⑪同一한 目的의 演說會의 開催申告가 團體사이 또는 前項에 規定된 政黨이 아닌 政黨사이 에 競合된 때에는 申告順位에 의하되 同時에 申告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優先하여 演說會를 開催할 者를 決定한다.

⑫演說員의 申告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演說員의 身分保障) 演說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選舉管理委員會法 第1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告知壁報) ①政黨과 團體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會의 告知를 위

하여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檢印을 받아 壁報를 作成 貼付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壁報의 枚數는 演說會 1회에 區市에 있어서는 400枚以內로 邑 面에 있어서는 200枚以內로 하고 그 規格 記載事項과 貼付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告知壁報作成에 所要되는 經費는 이를 國庫가 負擔한다.

第33條(公共施設等の 利用) ①政黨과 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施設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演說會의 場所로서 無料로 使用할 수 있다.

1. 學校·公會堂·公園·運動場·市場.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이나 施設.

②學校 기타 公共施設의 管理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授業時間 기타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른 目的의 使用에 優先하여 그 使用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34條(演說禁止場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場所에서는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을 위하여 演說會를 할 수 없다.

1. 前條에 規定된 以外의 國家 地方自治團體 國營企業體· 또는 國家管理企業體가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建物 施設.
2. 汽車·電車·航空機·船舶·乘合自動車의 停車場構內.
3. 病院·診療所·圖書館·研究所·試驗所와 기타 醫療·文化·研究施設.

第35條(擴聲裝置의 使用制限) ①政黨과 團體는 演說會의 경우 擴聲裝置를 使用할 수 있다.

②政黨과 團體는 郡地域에 있어서는 投票日로부터 7日以前에 限하여 1郡에 1日간 擴聲裝置를 使用할 수 있다.

③休戰線 8,000[미터]안의 地域에서는 演說會를 위하여서도 擴聲裝置를 使用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다른 政黨과 團體의 演說會의 開催中에는 그 演說會場所로부터 區·市

에 있어서는 300미터 郡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에서는 擴聲裝置를 使用할 수 없다.

第36條(討論등의 掲載禁止)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發行하는 官報 公報等の 刊行物에 憲法改正案에 對한 贊成 또는 反對의 意見을 掲載할 수 없다.

第37條(宣傳壁報 懸垂幕等の 揭示等の 禁止) 누구든지 憲法改正案에 對한 贊成 또는 反對를 위하여 宣傳壁報를 貼付하거나 懸垂幕 立看板 標札 廣告塔 廣告板 기타 施設 및 사람의 着用物을 揭示 또는 着用할 수 없다.

第38條(虛偽放送등의 禁止) 누구든지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을 위하여 放送 또는 刊行物을 通하여 虛偽의 事實을 宣傳하거나 事實을 歪曲하는 宣傳을 하여 國民投票의 公正을 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9條(新聞 雜誌등의 不法利用의 制限) 누구든지 憲法 改正案을 贊成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刊行物을 經營 編輯 取材 또는 執筆하는 者에게 金品 饗應 기타 利益을 提供하거나 提供할 意思의 表示 또는 約束을 하여 憲法改正案에 關한 廣告以外의 贊成 또는 反對의 報道·評論등을 掲載하게 할 수 없다.

第40條(特殊關係를 利用한 運動禁止) ①누구든지 學生 또는 未成年者에 對한 特殊關係를 利用하여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을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教育機關이나 宗教的 職業的 團體에 對한 特殊關係를 利用하여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을 할 수 없다.

第41條(署名·捺印運動禁止) 누구든지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의 目的으로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第42條(飲食物提供禁止) 누구든지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을 위하여 어떠한 場所에서나 어떠한 名目으로서도 飲食物을 提供할 수 없다.

第43條(騷亂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國民投票에 關한 運動을 위하여 隊伍를 組織하고 街路를 行進하거나 連呼行爲를 할 수 없다.

第44條(夜間演說禁止) 夜間(下午11時부터 上午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演說會를 開催할 수 없다.

第45條(特定人誹謗禁止) ①누구든지 國民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特定人의 身分·經歷·人格 또는 그 所屬政黨에 關하여 虛偽의 事實을 陳述하거나 流布할 수 없으며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個人의 人身攻擊을 할 수 없다.
②演說會에서 前項의 規定에 違反된 演說을 할 때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職權으로 또는 申告에 의하여 이를 警告하고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發言을 中止시킬 수 있다.

國 7 章 國民投票日과 投票

第46條(國民投票日의 公告) ①大統領은 늦어도 國民投票日前 7日까지 國民投票日을 公告한다.
②國民投票日은 國會에서 憲法改正案이 議決된 날로부터 20日以後이어야 한다.

第47條(投票方法) ①國民投票는 記標方法에 의한 投票으로써 하되 1人1票로 한다.
②投票는 投票所에서 直接한다. 다만, 不在者投票는 郵便으로 한다.
③投票에는 投票人의 姓名을 表示하지 못한다.

第48條(投票所의 設置와 公告) ①投票所는 投票區마다 設置하되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名稱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前項但書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公告하여 投票人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③投票所는 學校·邑·面 또는 洞의 事務所와 公會堂의 順位로 設置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기타의 場所에 設置한 때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야 한다.
④兵營안에는 投票所를 設置하지 못한다.
⑤投票所의 記標場所는 다른 사람이 窺볼 수 없도록 設置하여야 하며 어떠한 標識도 해서는 아니된다.
⑥與黨과 第1野黨의 投票參觀人은 投票所

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다.

⑦投票所에는 投票事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投票事務從事員을 둔다.

⑧投票事務從事員은 當該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또는 教育公務員中에서 그 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委囑하되 投票日前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49條(投票時間) ①投票所는 上午 7時에 열고 下午 5時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待機하고 있는 投票人에게는 投票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投票를 開始할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은 投票函 및 記票場所內외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投票所參觀人이 關與하여야 한다. 그러나 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所參觀人이 參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郵便投票는 投票日의 下午 5時까지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到着하여야 한다.

第50條(投票用紙) ①投票用紙는 贊成과 反對의 兩欄을 두어야 한다.

②投票用紙의 書式과 規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1條(投票用紙의 模型의 公告)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各 投票區마다 公告하여야 한다.

第52條(投票用紙·投票函의 作成) ①投票用紙와 投票函은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서 作成하되 投票函의 規格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郵便投票用投票函은 따로 作成하여야 한다.

③投票用紙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④投票用紙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서 指定하는 時間과 場所에서 與黨과 第1野黨의 代理人이 合席하여 加印하여야 한다.

⑤前項의 規定에 의한 加印은 늦어도 投票人名簿確定日로부터 3日以內에 完了하여야 한다. 다만, 郵便投票의 投票用紙에 대한 加印은 不在者申告人名簿確定日 翌日에 完了하여야 한다.

⑥第4項의 政黨이 代理人을 選任하지 아니

하거나 選任되었으나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事故로 因하여 加印할 수 없거나 加印을 拒否 또는 遲延하거나 기타 事由로 前項의 期開內에 加印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이 加印한다 ⑦政黨代理人의 選任·加印의 方法 기타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3條(投票通知票交付) ①區·市·邑·面의 長은 投票通知票를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投票人이 不在中인 때에는 戶主, 世帶主, 家族, 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者)에게 投票日前 2日까지 交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投票通知票에는 投票人의 住所, 姓名, 性別, 生年月日 및 投票人名簿登載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③投票通知票를 交付할 때에는 受領證을 받아야 하며 投票通知票의 交付가 끝난후 投票區別로 投票通知票交付錄을 作成하여 受領證 및 交付되지 아니한 殘餘投票通知票와 함께 遲滯없이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④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交付되지 아니한 殘餘投票通知票를 第1項의 規定에 準하여 投票日前日까지 受領證을 받고 交付한 후 投票通知票交付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交付하지 못한 投票通知票에 대하여는 投票通知票交付錄에 그 事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54條(投票用紙의 受領) ①投票人은 本人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所參觀人의 參觀下에 住民登錄證과 投票通知票를 提示하고 本人임을 確認받은 후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앞에서 投票人名簿에 捺印 또는 拇印하고 投票用紙 1枚를 받아야 한다

②郵便投票의 投票用紙는 不在者申告人名簿 確定日로부터 3日以內에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서 投票用紙를 封套에 넣어 回送用 外封套에 넣고, 다시 發送用外封套에 넣어 封緘하고 2日안에 發送하여야 한다.

③郵便投票의 發送과 回送은 無料登記郵便으로 한다.

④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住民登錄證을 提示하지 아니한 投票人에게 投票用紙를 交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通知票를 持參하지 아니한 投票人이라도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投票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임이 確認된 때에는 投票用紙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55條(投票의 制限) ①投票人名簿에 登載되지 아니한 者는 投票하지 못한다. 다만, 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權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投票人名簿에 登載되었더라도 投票口에 投票權이 없는 者는 投票하지 못한다.

③不在者申告人名簿에 登載된 投票人은 郵便投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投票할 수 없다.

第56條(記標節次) ①投票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記標所에서 投票用紙에 贊成·反對를 選擇하는 標를 한 후 그자리에서 보이지 아니 하게 접어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의 面前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②投票人이 投票用紙를 汚損한 때라도 이를 再交付하지 아니한다.

③盲人 기타 身體의 不具로 인하여 스스로 記標를 할 수 없는 投票人은 自己가 選擇한 者 1人을 同伴하여 投票를 援助하게 할 수 있다.

第57條(記標方法) 投票人이 投票用紙에 贊成·反對의 選擇을 하는 標를 할 때에는 ○의 標로써 하여야 한다.

第58條(委員의 參與定足數) 投票所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過半數가 參與하여야 한다.

第59條(投票所參觀) ①與黨과 第1野黨(이하「參觀政黨」이라한다)은 投票所參觀人으로서 하여금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②參觀政黨은 投票口前 3日부터 投票開始前 30分까지 投票所參觀人의 姓名을 當該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되 投票口에 있어서는 投票所에서 申告할 수 있다. 다만, 投票所參觀人의 變更은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③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所參觀人席을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設置하여야 한다.

④投票所參觀人은 參觀政黨마다 4人을 選定하되, 參觀할 때에는 2人씩 交代參觀하게 한다.

⑤投票所參觀人은 投票事務에 干涉하거나, 投票를 勸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投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所參觀人이 投票干涉·不正投票 기타 이 法의 規定에 違反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要求한 경우에 그 要求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⑦投票所參觀人은 投票所안에서 事故가 發生한 때에는 投票狀況을 撮影할 수 있다.

第60條(檢事등의 投票所出入禁止와 秩序維持)

①檢事·警察官이나 現役軍人은 投票人으로서 投票할 때 이외에는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②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紊亂하여 公正한 投票가 實施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正服警察官의 援助를 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要求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官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回復되거나 委員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즉시 投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④投票者·投票所參觀人·投票區選舉管理委員 및 그 上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과 投票事務從事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第61條(武器등의 携帶禁止) 前條第2項 및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서 武器·兇器 또는 爆發物을 携帶하지 못한다.

第62條(投票의 秘密保障) ①投票의 秘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②投票人은 投票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國家 또는 어떠한 機關이라도 이를 質問하거나 그 陳述를 要求하지 못한다.

第63條(投票函의 封印) 投票所를 달는 時間이 된 때에는 投票區選舉管理委員長은 投票所의 入口를 닫고 投票所안에 있는 投票가 끝난후 投票所參觀人의 參與下에 出席한 委員全員과 함께 投票函을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마만, 封印을 拒否하는 委員이나 參與를 拒否하는 投票所參觀人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64條(投票錄의 作成) 投票區選舉管理委員長은 投票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出席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署名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65條(投票函등의 送付) ①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 投票錄과 殘餘投票用紙를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送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函을 送付할 때에는 各參觀政黨의 投票所參觀人 1人씩 同伴할 수 있으며, 護送에 필요한 正服裝警察官 2人에 限하여 同伴할 수 있다.

第66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投票區選舉管理委員長은 投票가 끝난 후 投票人名簿 기타 投票에 관한 모든 書類와 印章을 當해 地域區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8章 開票

第67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開票할 때에는 委員過半數가 出席하여야 한다.

第68條(開票所의 設置와 公告) ①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그 區·市·郡廳所在地에 設置한 開票場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開票事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 從事員을 둔다.

③開票事務從事員은 當該區域안의 關係行政機關 또는 法院所屬公務員中에서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委囑하되 投票日前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69條(開票開始) ①開票는 投票區選舉管理委

員會로 부터 投票函이 全部 도착된 후에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一部 投票函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投票函에 3分の2 이상이 全도착되면 開票를 開始할 수 있다.

②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郵便投票를 접수하고 이를 즉시 不在者用 投票函에 投入保管하여야 하며 郵便投票函은 投票日 下午 5時부터 本人이 發送한 여부를 확인하고 外封套를 開封하여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같이 혼합하여 開票한다.

第70條(投票函의 開函) ①投票函을 開函할 때에는 委員長은 그 뜻을 宣布하고 出席한 委員 全員과 함께 投票函의 봉쇄와 봉인을 檢査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正當한 理由없이 檢査를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②委員長은 開函한 후 投票數를 계산하여 投票錄에 기재된 投票用紙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投票函은 순차적으로 開函하되 동시에 計票하는 投票函은 2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贊成 및 反對投票數의 발표는 投票區單位로 행하되 出席한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은 發表前에 贊成·反對 및 無效의 票數를 檢閲하여야 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事由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71條(開票參觀) ①參觀政黨은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開票參觀人은 各參觀政黨마다 8人을 선정하여 開票진후를 不問하고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에 신고하되 4人씩 交代하여 參觀하게 한다.

③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視聽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事務從事員의 相對便에 開票參觀人席을 만들어야 한다.

④開票區參觀人は 언제든지 巡廻監視할 수 있다.

⑤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부터 開票에 關한 違法事項에 대하여 是正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⑥開票參觀人は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撮影할 수 있다.

⑦一般人은 區劃된 場所에서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가 發給하는 觀覽證을 받아 觀覽할 수 있다.

⑧前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참작하여 適當한 수로하되 政黨別로 均등하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

第72條(無効票)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記標는 無効票로 한다.

1. 正規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아니한 것.
2. 贊成·反對 어느 쪽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3. 贊成·反對 모두 標를 한 것.
4. 贊成·反對 어느 쪽에 標를 한것인지 識別할 수 없는 것.
5. ○票 이외의 事項을 記載한 것.
6. 郵便投票에 있어 封函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投票人이 本人인지의 여부가 確認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記標는 無効票로 하지아니 한다.

1. ○票가 一部分 표시되거나 內孔이 메어도 當該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記標用具를 사용하여 記標한 것이 명확한 것.
2. 同一欄에만 두個이상 記標되거나 重疊 記票된 것.
3. 記標欄외에 記標한 것이라도 어느 欄에 記標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贊反의 區分欄線上에 記標되어 있으나 어느欄에 記標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記標한 것이 轉寫된 것으로서 어느欄에 記標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印肉으로 汚損되었으나 어느欄에 記標

한 것인가가 명확한것.

第73條(記標의 効力에 關한 疑義) 記標의 効力에 關하여 疑義가 있을 때에는 出席한 委員過半數의 決議로써 이를 決定한다.

第74條(開票所의 秩序維持) 開票區選舉管理委員長은 開票所의 秩序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察官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第75條(開票所의 出入制限)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 및 上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 開票 參觀人 기타 法에서 許容된者 이외에는 開票所에 들어가지 못한다.

第76條(武器등의 携帶禁止) 第74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서 武器 兇器 또는 爆發物을 携帶하지 못한다.

第77條(開票錄의 作成) 開票區選舉管理委員長은 開票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署名·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開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78條(投票紙·投票錄등의 引繼)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開票가 끝난후 投票를 贊成·反對와 無效로 區別하여 各各 封套에 넣어 封印한후 投票錄·投票函 기타 投票에 關한 모든 書類 및 印章과 함께 當該 地域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79條(投票結果의 公表와 보고)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의 結果를 즉시 公表하는 동시에 서울特別市·釜山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開票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第80條(書類등의 保存) 國民投票에 關한 投票紙와 書類는 國民投票日로부터 1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第9章 確 定

第81條(中間集計) ①서울特別市·釜山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區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第79條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投票人數·投票한 各數·贊成·反對와 無效의 投票數를 集計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는 委員過半數가 出席하여야 한다.

第82條(中間集計錄의 作成) 서울特別市·釜山

市·道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中間集計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署名·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中間集計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83條(集計結果의 公表와 보고) 서울特別市·釜山市·道選舉管理委員會는 集計의 結果를 즉시 公表하는 同時에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中間集計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第84條(結果의 總集計)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서울特別市·釜山市·道選舉管理委員會로부터 前條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投票人數 投票한者數·贊成·反對와 無效의 投票總數를 集計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는 委員過半數가 出席하여야 한다.

第85條(國民投票錄)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은 國民投票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出席한 委員全員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署名·捺印을 拒否하는 委員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 國民投票錄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86條(總結果의 公表와 通報)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第84條 第1項의 集計가 끝난후 즉시 그 結果를 公表하고 이를 大統領 및 國會議長에게 通報하여 한다.

第87條(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天災·地變 기타 不可避한 事由로 인하여 1 投票區 또는 數投票區의 投票를 實施하지 못하였거나 投票函이 紛失 또는 燒失되어 國民投票의 結果에 異動이 미칠 憂慮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그 投票區의 投票를 다시 行한 후 國民投票의 總結果를 公表하고 이를 大統領 및 國會議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는 그 原因이 除去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行하되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日 5日前에 投票日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88條(確定의 公布) 大統領이 第86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憲法改正案의 確定通報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0章 訴訟

第89條(國民投票無效의 訴訟) 國民投票의 效力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投票人은 投票人 10萬이상의 贊成을 얻어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投票日로부터 20日以內에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第90條(國民投票無効의 判決) 大法院은 前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 國民投票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거하여 發하는 命令에 違反하는 事實이 있는 경우라도 國民投票의 結果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限하여 投票의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를 判決한다.

第91條(國民投票訴訟의 優先處理) 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은 다른 訴訟에 優先하여 신속히 裁判하여야 한다.

第92條(訴訟節次) 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에는 이 法에서 規定하는 외에 行政訴訟法第9條 第1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民事訴訟法中 第135條 第138條 第139條第1項 第206條 第259條 第261條의 規定은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93條(國民投票訴訟에 관한 通知)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訴訟이 提起된 때에는 大法院長은 그 事實을 大統領 및 國會議長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또한 같다.

第11章 再投票

第94條(再投票) ①第89條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結果 國民投票의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判決이 있는 때에는 再投票를 하여야 한다.

②投票의 全部無效判決이 있는 때에는 前項의 事由가 確定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再投票를 行하여야 하며 投票日은 投票日前 7日까지 大統領이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全部無效判決이 確定된 날을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 본다.

③投票의 一部無效의 判決이 있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가 無效로된 當該 投票區의 再投票를 行하여 確定 또는 否決에 대한 決定을 다시 한후 이를 大統領 및 國會議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는 確定判決을

받은후 20日以内に 행하되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7日전에 그 기일을 公告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投票는 判決에 明示가 없는한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그 投票에 投票人名簿를 使用한다.

⑥大統領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憲法改正案에 관한 公布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第89條와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結果 國民投票의 一部가 無效인 경우라도 다시 投票를 하지 아니하고 國民投票의 結果를 決定할 수 있을 때에는 一部再投票를 實施하지 아니 한다.

⑧一部再投票에 있어서의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에 대하여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第12章 補則

第95條(投票의 延期) 天災·地變으로 因하여 投票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投票를 延期하거나 다시 投票日을 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의 制限을 받지 아니 한다.

第13章 罰則

第96條(詐僞登載, 虛僞捺印罪 등) ①詐僞의 方法으로 投票人名簿에 登載되게 한 者나 第54條 第1項의 경우에 虛僞의 捺印을 한 者는 6月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投票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公務員이 投票人名簿에 故意로 投票權者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記載한 때에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97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贊成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投票人 또는 다른 政黨이나 團體에게 金錢, 物品, 車馬, 饗應 기타 財産上

의 利益이나 公私의 職을 提供하거나 提供의 意思를 表示 또는 約束한 者.

2.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國民投票에 관한 運動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斡旋·勸誘에 대한 報酬를 目的으로 投票人 또는 다른 政黨이나 團體에게 前號에 規定한 行爲를 한 者.

3. 投票를 하였거나 아니 하였다는 報酬로서 投票人에게 前號에 規定한 行爲를 한 者.

4. 國民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學校 기타 公共機關·團體에게 金錢, 物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 또는 約束한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行爲에 관하여 斡旋 또는 勸誘를 한 者.

6. 第1號 내지 第4號에 規定한 利益의 提供을 받거나 그 申請을 承諾한 者.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國民投票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 또는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4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第98條(多數人買收 및 多數人利害誘導罪)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以下의 禁錮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財産上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國民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多數의 投票人 演說員에 대하여 前條 第1項에 揭記된 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

2. 前號의 行爲를 할 것을 都給말거나 都給말게 한 者.

第99條(新聞 雜誌不法利用罪) 第39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0條(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利得의 沒收) 第97條 내지 第99條의 行爲로 인하여 받은 利益은 이를 沒收하다. 다만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101條(投票의 自由妨害罪) ①國民投票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投票人에 대하여 暴行 脅迫 또는 誘
引을 하거나 不法으로 逮捕 또는 監
禁한 者.

2. 集會 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偽
計 詐術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投票의
自由를 방해한 者.

②檢事 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와 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02條 (軍人에 의한 投票自由妨害罪) 軍
人으로서 憲法改正案을 贊成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 하게 하기 위하여 그 隸下軍
人 또는 軍屬인 投票人의 投票權行使를
暴力 脅迫 또는 그밖의 方法으로 방해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
에 處한다.

第103條 (職權濫用に 의한 投票의 自由妨害
罪) 國民投票에 관하여 選舉管理委員會委
員이나 職員 警察官 기타의 國民投票關係
公務員이나 投票人名簿作成에 關係있는 者
가 故意로 投票人名簿의 閱覽을 방해하거나
그 職務를 遺棄하거나 投票通知票를 交付
하지 아니 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여 自由
를 방해하는 때에는 5年以下の 懲役이
나 禁錮 또는 1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4條 (告知壁報作成등에 대한 妨害罪)

①告知壁報의 作成 貼付를 正當한 理由없
이 방해하거나 毀損撤去한 者는 2年以下
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國民投
票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官이
前項의 行爲를 할 때에는 3年以下の 懲役
이나 禁錮 또는 6萬圓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第105條 (投票의 秘密侵害罪) ①누구든지 投票
의 秘密을 侵害하거나 投票人에 대하여
投票한 또는 投票하고자 하는 內容의 표
시를 要求한 때에는 2年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警察官
軍人 기타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
에는 5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106條 (投票 開票의 干涉罪) ①投票所나

開票所에서 正當한 理由없이 投票나 開票
에 干涉한 者 또는 投票나 開票에 영향
을 주는 行爲를 한 者는 3年以下の 懲
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檢事 警察官 軍人이나 國民投票事務에 關
係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
는 5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
다.

第107條(投票函에 관한 罪) ①不法으로 投
票函을 열거나 投票函中에 있는 投票紙를
빼내거나 投票函을 破壞 또는 奪取한 者는
1年以上 7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檢査·警察官이나 軍人이 前項의 行爲를
한 때에는 1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 또
는 禁錮에 處한다.

第108條(投票事務關係者나 施設等에 대한 暴行
·攪亂罪)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
員, 國民投票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에게
暴行, 脅迫을 하거나 投票所나 開票所를 攪
亂하거나 投票用紙·投票人名簿 기타 國民
投票에 관한 書類·印章 또는 器具를 抑
留·毀損 또는 奪取한 者는 1年以上 7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9條(多數人의 投票妨害罪) ①多數人이 集
合하여 第101條나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
는 다음의 區分에 의하여 處罰한다.

- 1. 主謀者는 3年以上 10年以下の 懲役 또
는 禁錮.
- 2. 他人을 指揮하거나 率先하여 行動한
者는 1年以上 7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
- 3. 附和하여 行動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
이나 禁錮 또는 2萬圓이하의 罰金.

②前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多數人이 集
合한 경우에 權限있는 公務員의 解散命令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不應한 때에는
그 主導의 行爲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
는 禁錮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2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0條(投票所·開票所濫入罪) 武器·凶器·
爆發物 기타 他人을 殺傷할 수 있는 物
件을 携帶하고 投票所나 開票所에 濫入한
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111條(詐僞投票罪) ①姓名을 詐稱하거나 기타 詐僞의 方法으로 投票하였을 때에는 2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國民投票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게 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2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등) ①投票을 僞造, 變造 또는 損壞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 또는 이 法에 의하여 作成하는 文書에 虛僞의 記載을 한 者는 1年以上 7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나 職員, 國民投票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113條(虛僞事實公表罪) 누구든지 演說·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 어떠한 方法을 불문하고 國民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特定人의 所屬·思想·身分·職業 또는 經歷등에 關係하여 虛僞의 事實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4條(特定人誹謗罪) ①누구든지 演說·新聞·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 어떠한 方法을 불문하고 國民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게 할 目的으로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特定人을 誹謗한者는 3年以不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行爲가 眞實한 事實로서 오로지 公共의 利益에 關係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 한다.

第115條(特殊地位利用·署名運動 등 不正運動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9條, 第30條第1項, 第4項, 第6項, 第7項,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民投票에 關係한 運動을 한 者.

2. 第34條 또는 第41條 내지 第44條 規定에 위반하여 國民投票에 關係한 運動을

한 者.

第11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4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35條, 第37條와 第38條에 違反하여 國民投票에 關係한 運動을 한者.

②第96條 내지 第115條 및 本條第1項이 의에 國民投票에 關係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各種制限規定을 違反한 者는 5千圓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7條(國民投票에 關係한 犯罪煽動罪) 누구든지 演說, 壁報, 新聞 기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이 章에 規定한 罪를 犯할것을 煽動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6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8條(公訴時效)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投票日後 3月을 經過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犯人이 逃避한 때에는 그 期間을 1年으로 한다.

第119條(裁判의 管轄) 國民投票事犯과 그 共犯에 關係한 第1審裁判은 地方法院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②(施行令) 이 法施行에 關係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廢止法律) 法律第1166號, 國民投票法을 이를 廢止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이미 公告된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에 있어서 是 第12條의 投票區는 이 法 施行당시 의 國會議員選舉法에 依한 投票區에 第13條의 開票區는 1969年1月1日 現在의 大統領選舉法에 依한 開票區에 依한다.

⑤(同前) 이 法 施行當時 이미 公告된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에 第15條第1項의 投票人名簿作成基準日과 同條第2項의 不在者申告對象者決定基準日은 各各 이 法 施行日로 한다.

⑥(同前) 이 法施行當時 이미 公告된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에 있어서의 第15條第1項의 投票人名簿作成은 이 法 施

